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54 |
|----------|------|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7. 3. 21.)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의 근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명변경)

나.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삭제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3, 3조의4, 제4조, 제10조, 제14조)

- “ 동 보장협의체 ” 를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로 변경
- 복지위원 관련 조항 삭제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및 정비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4조(복지위원)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9. 1. ~ 2017.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41조 및 제4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제7조 및 제9조”를 “제7조”로,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복지위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대표협의체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을 “구
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위원장 대표 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을 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중전의 제3조의2)의 제목“(동 보장협의체)”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

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부령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장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실무분과의 구성 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합서비스 분과는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보건의료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중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을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 대표협의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협의체 및 복지위원”을 “협의체 등의”로 한다.

제15조 중 “원활한”을 “원활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서울특별시 성동구</u> <u>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u> <u>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1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u>제7조</u> 및 <u>제9조</u>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u>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u>와 <u>복지위원</u>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u>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실무</u></p> | <p><u>서울특별시 성동구</u> <u>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1조----- ----- <u>제7조</u>-----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p> <p>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실무</u></p> |

협의회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회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⑦ (생략)

⑧ 실무협회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협의회위원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⑥·⑦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조의2(실무협회의 구성 등)

① 실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를 한다.

1. 대표협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 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 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
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동 보장협의체) ① 지역
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동 단위 지
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
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
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동 보장협의체 구성

제3조의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구성 등) 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③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
원은 부령 제7조제2항 -----

-----.

④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⑥ ----- 지역사회보장협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3(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 -----
-----.

제3조의3(실무분과의 구성 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합서비스 분과는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보건의료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
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
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
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
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명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

-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 | |
|--|---|
| <p>제10조(회의록)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u>해당 대표협약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14조(수당 등) 각 <u>협약체 및 복지위원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u>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협약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약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u>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 <p>제1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하여야</u> ----- -----.</p> <p>제14조(수당 등) -- <u>협약체 등의</u> ----- ----- ----- ----- -----.</p> <p>제15조(협약체 운영지원) ----- ----- ----- <u>원활한</u> ----- ----- -----.</p>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관련 법령, 용어 등 변경 및 삭제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이윤정 (2286-6279)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복지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0. 19. /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7. 10. 20.
- 다. 상정일자: 2017. 10. 31.
(제234회 임시회 개최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 가.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 나.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7. 3. 21.)됨에 따라 위임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의 근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명변경)

나.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삭제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3, 3조의4, 제4조, 제10조, 제14조)

- " 동 보장협의체 " 를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로 변경
- 복지위원 관련 조항 삭제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및 정비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4조(복지위원)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9. 1. ~ 2017.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7. 3. 21. 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지위원’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세분화하였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